

- 2020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- 경기도 「청년 복지포인트」 3차 모집공고

경기도일자리재단은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 복지포인트)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28일

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

I 모집 개요

- 신청기간: 2020. 11. 1.(일) 09:00 ~ 11. 16.(월) 18:00
 - 모집인원: 5,000명 내외(3차)
 -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(<http://youth.jobaba.net>)
 - 지원대상
 - 만 18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
 - 경기도 내 중소기업(중견)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*(주36시간 이상 근무)재직자
 - * 비영리법인 중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제외
- ◆ 공공기관 범위: 정부 공공기관, 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, 지방공기업

※ 관련 규정

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공공기관)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(적용 범위)
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적용 대상 등)
- 건강보험료 3개월('20년 8월, 9월, 10월) 평균 86,710원(월 과세급여 260만원)이하 납부자
 - 지원내용: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(연 120만원)
 - 지급방법: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(4회 분할지급)
 - 지원기간: 1년(2020년 12월 ~ 2021년 11월)

II

신청 자격

○ 아래 ①~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[접수기준일('20.11.1.)기준]

① 연 령: 접수기준일('20.11.1.)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* 청년

* 1985. 11. 2. ~ 2002. 11. 1. 출생자

② 거 주 지: 접수기준일('20.11.1.)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중인 자

③ 근무조건

- 경기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*에 주36시간 이상** 근무하고 3개월(90일)***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

* 비영리법인 중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제외

*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(단,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.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)

***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0.8.4. 이전인 경우 해당
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('20년 8월, 9월, 10월) 평균 86,710원(월 과세급여 260만원)* 이하인 자

*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('20년 8월, 9월, 10월) 평균급여가 260만원 이하인 자

◎ 다음의 경우에는 **신청 불가**

- 본 사업 참여자격(연령, 거주지, 근무조건) 미충족자

※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, 국가지방자치단체(사업자번호 83) 등

- 접수기준일('20.11.1.)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~③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*

* 단,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

① 청년 노동자 통장(舊 일하는 청년 통장)

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 연금)

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 마이스터 통장)

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 복지포인트) 참여 이력이 있는 자

- 국가근로장학생 / 해외파견자

- 휴직자(육아휴직 포함) / 병역복무 이행자(현역, 사회복무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등)

※ **내일채움공제,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**

III

신청 방법

< 신청 시 유의사항 >

-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(PC 또는 Mobile)
-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(누락, 식별불가)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
-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
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 복지포인트) 신청매뉴얼 참조(홈페이지-자료실)

○ 신청기간: 2020. 11. 1.(일) 09:00 ~ 11. 16.(월) 18:00

※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.

○ 신청방법

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(<http://youth.jobaba.net>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(참여접수 -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)

※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: ☎1577-0014(평일 09:00 ~ 18:00)

○ 제출서류(온라인으로 파일 첨부)

- 주민등록초본,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근무확인서,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('20.11.1.)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

【4대 사회보험 가입자】

- ① 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
(별도서식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)
- ④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(최근 5년)내역, 병역사항 전체 포함) (읍면동 주민센터, 정부24)
-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(근무처)
-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
-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3개월*)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

* 기준 3개월 : 2020년 8월, 9월, 10월

[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]

- ① 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③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(최근 5년)내역, 병역사항 전체포함) (읍면동 주민센터, 정부24)
-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(근무처)
- ⑤ 고용임금확인서(별도서식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)
- ⑥ 근로계약서 사본
- ⑦ 급여통장사본(2020년 8월, 9월, 10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)

IV 선정 기준

○ (필수요건)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

- 접수 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(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)
-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
 - 주민등록여부, 3개월 이상 재직, 중소·중견·소상공인업체·비영리법인 근무여부, 건강보험료(급여) 기준 충족 여부,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

○ (선정기준) 3개월(2020년 8월, 9월, 10월)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

※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

○ (동점자 처리) 동점자 발생시

-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
-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

V 최종 대상자 선정

○ 최종 대상자 발표: 2020. 11. 30.(월) 예정

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(<http://youth.jobaba.net>)에 게재
- ※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VI

유의사항

-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온라인 신청·접수이며,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반드시 신청 후 ‘참여신청 진행현황’ 메뉴에서 최종제출(접수완료)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 - 최종제출 미확인, 제출 이후 초기화 또는 수정으로 인한 임시저장 전환으로 신청(제출)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.
- 신청 기간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,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.
-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,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,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대상자 선정 후,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(**약정서 제출, 복지물 가입**) 불이행시 직권 해지 조치됩니다.
-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: ☎1577-0014(평일 09:00~18:00)
 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(<http://youth.jobaba.net>) 내 FAQ 참조